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07
----------	-----

2023년 6월 21일  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3년 5월 30일, 남궁역 의원 외 49명  
나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5일  
다. 상정일자 : 제319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 
(2023년 6월 21일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 설명자: 남궁역 의원]

가. 제안이유

- 기후변화 및 탄소저감 대응에 따라 가로수 수종 선정시 탄소흡수량이 많은 수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, 녹지 확충을 위해 도로의 교통섬에 그늘목 식재, 화단 조성 등 다양한 가로녹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골자

- 1) 가로수 수종 선정시 환경오염 저감, 기후 조절 기능과 함께 탄소 흡수량이 많은 수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5조제1항제4호).
- 2) 기후변화 대응, 녹지 확충, 경관 향상 등을 위해 중앙분리대 뿐만 아니라 교통섬에도 그늘목, 녹지대를 적극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6조제1항제3호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

### 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 및 탄소저감 대응에 따라 가로수 수종 선정 시 탄소흡수량이 많은 수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, 녹지 확충을 위해 도로의 교통섬에 그늘목 식재, 화단 조성 등 다양한 가로녹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-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농도 증가 등 환경문제로 인한 도시민의 생활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, 대기정화와 기후완화의 기능을 가진 숲과 녹지의 기능이 부각되고 있음.

정부는 미세먼지 차단숲, 도시바람길 숲, 생활밀착형 숲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유희지 조림, 도시숲, 생활숲 등에 나무를 심어 탄소흡수 기능을 지속해서 확대·유지관리 해나간다는 목표이나, 아직까지 탄소흡수원 정책은 대부분 산림 위주로써 도시지역에서의 확충 계획은 많지 않은 상황임.

- 푸른도시여가국은 서울시의 도시문제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‘그린 인프라’로서의 공원녹지 기능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, 그 중 기후변화에 따른 ‘탄소중립’을 위해 탄소흡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역할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.

가로수는 도시지역에서 녹지를 확보해 숲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

있는 공간으로써 향후 탄소흡수원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과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지만, 아직까지 서울시는 탄소흡수량 산정에 대한 구체화된 정책과 추진계획은 없는 실정임.

- 안 제5조는 가로수 수종 선정 시 탄소흡수에 알맞은 수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 환경 상황에 맞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되고, 서울시는 가로수가 탄소흡수원으로써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세부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4호 중 “조절”을 “조절, 탄소 흡수”로 한다.

제6조제3호 중 “중앙분리대”를 “중앙분리대, 교통섬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) ①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환경오염 저감, 기후 <u>조절</u> 등에 맞는 수종</p> <p>5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5조(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<u>조절, 탄소 흡수</u> -----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식재 위치) 가로수는 도로의 폭,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.</p> <p>1. ~ 2. (생 략)</p> <p>3. <u>중앙분리대</u> 등 그 밖에 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식재 위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중앙분리대, 교통섬</u> ----- ----- -----</p>